

의안번호	2209395
의 퇴 인	최보운 의원
회 답 일	2025. 1. 20.
추계번호	24A4115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	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¹⁾
- 교통약자의 전기차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로는 충전기 화면의 크기를 확대하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, 충전커넥터를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배치하고 무게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

1) 안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차 외에도 수소차 등 다른 차량이 포함되나, 수소차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로 실증사업 중인 1개 충전소(창원 성주)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직접 충전이 불가능하여 개정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추계에서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검토함

- 개정안 시행 이후²⁾ 설치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을 두는 경우 국가재정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
 - 현재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2022년부터 전량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로 설치하고 있어³⁾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로 수반되는 재정지출은 없을 것으로 보임
 -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에 대한 통일적인 설치 기준이 없으며 현황 자료 또한 부재한 상황으로,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은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의 설치 대수에 설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은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의 설치 요건을 “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”로 정하고 있어 설치 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향후 신규로 설치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수와 함께 ②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면수 기준을 가정하여야 하나,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
 - 또한,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를 위한 설치 단가로는 ①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교통약자의 편의에 부합하도록 넓게 설치하는 데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②일반 충전시설과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간 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

2)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며,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

3) 공공급속충전기 물품발주 구매규격서에 “편의제공형 충전기 설치 기준”을 반영하여 해당 기준을 만족해야만 입찰 참여 가능

- 참고로, 환경부는 최근 출시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교통약자 편의제공형으로 제작되고 있어 일반 충전기와 비교할 때 가격 차이가 없다는 의견으로, 환경부의 의견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기 설치에 따른 단가는 추가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
- 참고로,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과, 교통약자 편의 제공형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및 설치 단가는 다음과 같음
 - **(전용주차구역)** 한국환경공단⁴⁾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갖춘 주차장은 총 5,999개소(공영주차장 4,279개소)로, 해당 주차장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면수는 1만 5,880면(공영주차장 1만 445면)이며, 이 중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면수가 10면 이상인 주차장은 175개소(공영주차장 87개소), 해당 주차장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면수는 2,722면(공영주차장 1,294면)
 - * [참고자료 1]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
 - **(충전시설)**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은 41만 4,686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시설 9,431기)로, 이 중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은 5,957기(국가 운영시설 2,138기⁴⁾)
 - * [참고자료 2]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
 - **(충전기 설치단가)**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 전기차 충전기와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기 간 가격 차이는 없으며, 설치 단가는 급속 100kW급의 경우 약 2,300만원 내외, 급속 200kW급의 경우 약 2,800만원 내외
 - * [참고자료 3] 전기차 충전기 설치 단가
- 이에 신규 설치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4)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의 경우 현황 자료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 1]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

(단위: 개소, 면)

구분	주차장 수			주차면수		
	공영	민영	합계	공영	민영	합계
30면 이상	6	6	12	232	222	454
20~29면	9	16	25	205	351	556
10~19면	72	66	138	857	855	1,712
5~9면	305	182	487	1,907	1,165	3,063
2~4면	2,317	903	3,220	5,674	2,295	7,969
1면	1,570	547	2,117	1,570	547	2,117
합계	4,279	1,720	5,999	10,445	5,435	15,880

주: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www.ev.or.kr) 시스템 등록(2024.12.31.) 기준
자료: 한국환경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참고자료 2]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

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

(단위: 기)

구분	전기차 충전시설 전체	
		교통약자 편의제공형
국가(환경부)	8,353	2,138
지방자치단체	1,078	(자료 없음)
민간 등 기타	405,255	3,819
합계	414,686	5,957

주: 2024.12.31. 기준

자료: 환경부

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(정부, 연도별)

(단위: 기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전체	2,061	1,500	1,188	1,164	412	345
교통약자 편의제공형	27	60	130	1,164	412	345

주: 1. “전체”는 해당 연도에 정부가 신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전체 수량이며, “교통약자 편의제공형”은 해당 연도에 정부가 신규 설치한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기의 수

2. 2019년에 최초로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며, 2021년까지 일반형과 교통약자 편의제공형을 혼합발주하였고 2022년부터는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을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기본사양으로 반영하였음

3. 2024.12.31. 기준

자료: 환경부

[참고자료 3] 전기차 충전기 설치 단가

구분	일반 전기차 충전기	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기
급속 100kW 급	약 2,300만원 내외	
급속 200kW 급	약 2,800만원 내외	

주: 주요제조사에 최근에 출시하는 급속충전기는 교통약자형 충전기 형태로 제작되고 있어 일반 충전기와 가격 차이는 없으며, 사양에 따라 위에 제시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환경부